의안 번호	9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전홍표・권순재・류성국・박강우・박연정 박영주・배명갑・서명일・이우완・차중현 하경석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 과정 운영 및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에 따라 기존 조례 문구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나.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다.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주요 기능을 규정함.(안 제29조)

라.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수강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마.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별표를 수정 및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2의2)

바.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별지를 수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신・구별표대비표

다. 신・구별지서식대비표

라. 관계 법령

마.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를 “육성과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 및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레저산업”을 “시장이 해양레저산업”으로 한다.

4.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고 한다) 및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를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해양레포츠센터”를 “해양레포츠센터 및 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를 “시장이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을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해양레저산업”을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해양레포츠센터”를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이용료를”을 “이용료등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이용료 반환)”을 “(이용료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료를”을 “이용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를 “이용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용”을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수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료”를 “이용료등의”로 한다.

제7장(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제28조(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보수(補修) 교육 등을 실시하는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을 창원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대상 이론 및 실기 보수교육
2. 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해상안전 교육

제30조(수강료 납부 등)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2의2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연수원 수강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레포츠센터”는 “연수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수원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개정 2026. . .>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1. 일반(교육) 프로그램

(단위: 원)

교육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	교 육 내 용
청소년(19세 이하) 해양레포츠 교실	강습	3시간	10,000	• 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윈드서핑) • 해양레포츠 체험 •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1일	20,000	
시민 해양레포츠 교실	일반	2시간	15,000	
	강습	3시간	20,000	
		1일	35,000	
해양레포츠 연수・캠프교실	청소년	1일당	20,000	• 기초과정 및 수상안전교육 • 래프팅·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 크루저요트 체험
	성인	1일당	35,000	
자격증 취득반	4일		150,000	• 딩기요트·윈드서핑 자격취득 과정 (지도자자격증 발급수수료 별도)
조종면허 취득반	5일		700,000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연수 및 취득과정(요트, 일반)

2. 체험 프로그램

(단위: 원)

과 정	교육시간	수 강 료	비 고
크루저요트 체험	1시간	15,000	
	2시간	25,000	
래프팅보트, 카약 등	1시간	15,000	카약: 최대 2인승 레프팅보트: 최대 10인승
	2시간	30,000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모터보트, 래프팅보트, 카약)	1시간	10,000	동력 1종목 + 무동력 1종목
	2시간	15,000	동력 2종목 + 무동력 1종목

※ 창원시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시간 및 수강료 세분화 가능

3. 회원제 프로그램

(단위: 원)

과 정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월 회원제	1개월	100,000	• 2종목(딩기요트, 윈드서핑) - 고급과정 수료자만 해당 • 기간 내 10회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

4. 강의실 이용료

(단위: 원)

대강의실	소강의실	부대시설	비 고
40,000 (108㎡)	20,000 (30㎡)	냉방 5,000 난방 4,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토・일・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 이용 시 요금 가산 - 2시간 미만: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이용시간(시간 내 4시간) - 오전: 12:00 이전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 이후

5. 부대시설(샤워시설 등) 이용료

구 분	이용료/기 간	비 고
부대시설 (해상시설, 샤워시설 등)	5,000원/1일	• 오전: 09:00~12:00 • 오후: 14:00~17:00
슬립웨이(경사면)	20,000원/1일	•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할 것 •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6. 해양레포츠 장비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용시간	이 용 료	비 고
딩기요트, 카약, 래프팅	1일(1대) 기준	25,000	• 강사 필요시 인건비(1명): 100,000원 • 유류비 등 별도
크루저요트	1일(1대) 기준	300,000	
모터보트	1일(1대) 기준	150,000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의2] <신설 2026. .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수강료(제30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수강료 (1명 기준)	교육시간	정 원	비 고
보수교육 과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점검·관리, 항해 기술 등	70,000원	7시간 (이론 1, 실기 6)	4~8명	
해상안전교육 과정	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해상안전교육	40,000원	4시간 (이론 1, 실기 3)	4~8명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 .>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서

이 용 자	(남/여)
신 청 구 분	
이용·수강 일 시	
이용·수강 내 용	
감 면 금 액	
감 면 사 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의 감면

[]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 []수강료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감면결정사항		결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육성과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 및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 ---------- ------.
제2장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2장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인력, 교육, 장비 구매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4.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고 한다) 및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 -

제3장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3장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5. 해양레포츠센터 및 연수원 ----------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시장이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
제4장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	제4장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
제5장 해양레포츠센터	제5장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
제19조(이용료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9조(이용료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이용료등을 ----------.

제20조(이용료 반환) ①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생 략) ③ 제2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을 ----------. ② ---------- 이용료등----------. 1. ----------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수강------- 2. (현행과 같음) ③ ---------- 이용료등의 ----------.
<신 설>	제7장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신 설>	제28조(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보수(補修)교육 등을 실시하는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을 창원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대상 이론 및 실기 보수교육 2. 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해상안전 교육
<신 설>	제30조(수강료 납부 등)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2의2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연수원 수강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레포츠센터”는 “연수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수원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참고 **신·구별표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2]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15.>

<u>이용료 및 수강료</u>
(제17조 관련)

<u><신 설></u></td><td>[별표 2]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개정 2026. . .>

<u>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u>(제17조 관련)

[별표 2의2]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의2] <신설 2026. . .>

<u>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수강료</u>(제30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내 용</th><th>수강료(1명 기준)</th><th>교육시간</th><th>정 원</th><th>비 고</th></tr><tr><td>보수교육과정</td><td>동력수상레저기구 점검·관리, 항해 기술 등</td><td>70,000원</td><td>7시간 (이론 1, 실기 6)</td><td>4~8명</td><td></td></tr><tr><td>해상안전교육과정</td><td>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해상안전교육</td><td>40,000원</td><td>4시간 (이론 1, 실기 3)</td><td>4~8명</td><td></td></tr></table></td></tr>
</table>

참 고 **신 · 구별지서식대비표**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5.>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서

이 용 자	(남/여)
행 사 명	
행 사 일 시	
행 사 장 소 및 이용시설	
감 면 금 액	
감 면 사 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감면결정사항		결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 .>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서

이 용 자	(남/여)
신 청 구 분	
이용·수강 일 시	
이용·수강 내 용	
감 면 금 액	
감 면 사 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의 감면
[]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 []수강료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감면결정사항		결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4. 「어촌·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9.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판매·수리·지도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3. 삭제
4.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2장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해양레포츠 관련 개발계획
4.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인력, 교육, 장비구매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해양레포츠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3장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등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4장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해양레저산업 진흥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하며,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
2. 해양레포츠 대회 및 행사의 개최
3.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레포츠 활동의 교류
5. 해양레포츠 교실 설치 및 운영
6.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해양레포츠센터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포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시설 및 기능)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보관실
2. 강의실 등 교육시설
3. 수상레저기구의 계류(繫留) 시설

4. 탈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② 해양레포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레포츠 관련 수상안전·구조 교육
2.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4. 수상레저기구의 보관 및 대여
5.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장소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6조의2(휴관일)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나.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양레포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양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18조(이용 신청 등) ①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변경·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결정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해양레포츠 해상 교육에 참여할 때에는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의2(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이용료 반환) ①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이용 또는 상업적인 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이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는 경우

제22조(운영)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정규직으로 확보·유지하도록 해야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6장 삭제

제27조 삭제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15.>

이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1. 일반(교육) 프로그램

(단위: 원)

교육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	교 육 내 용
청소년(19세 이하) 해양레포츠 교실	강습	3시간	10,000	• 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윈드서핑) • 해양레포츠 체험 •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1일	20,000	
시민 해양레포츠 교실	일반	2시간	15,000	
	강습	3시간	20,000	
		1일	35,000	
해양레포츠 연수・캠프교실	청소년	1일당	20,000	• 기초과정 및 수상안전교육 • 래프팅·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 크루저요트 체험
	성인	1일당	35,000	
자격증 취득반	4일		150,000	• 딩기요트·윈드서핑 자격취득 과정 (지도자자격증 발급수수료 별도)
조종면허 취득반	5일		700,000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연수 및 취득과정(요트, 일반)

2. 체험 프로그램

(단위: 원)

과 정	교육시간	수 강 료	비 고
크루저요트 체험	1시간	15,000	
	2시간	25,000	
래프팅보트, 카약 등	1시간	15,000	카약: 최대 2인승 레프팅보트: 최대 10인승
	2시간	30,000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모터보트, 래프팅보트, 카약)	1시간	10,000	동력 1종목 + 무동력 1종목
	2시간	15,000	동력 2종목 + 무동력 1종목

※ 창원시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시간 및 수강료 세분화 가능

3. 회원제 프로그램

(단위: 원)

과 정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월 회원제	1개월	100,000	• 2종목(딩기요트, 윈드서핑) - 고급과정 수료자만 해당 • 기간 내 10회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

4. 강의실 이용료

(단위: 원)

대강의실	소강의실	부대시설	비 고
40,000 (108㎡)	20,000 (30㎡)	냉방 5,000 난방 4,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토・일・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 이용 시 요금 가산 - 2시간 미만: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이용시간(시간 내 4시간) - 오전: 12:00 이전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 이후

5. 부대시설(샤워시설 등) 이용료

구 분	이용료/기 간	비 고
부대시설 (해상시설, 샤워시설 등)	5,000원/1일	• 오전: 09:00~12:00 • 오후: 14:00~17:00
슬립웨이(경사면)	20,000원/1일	•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할 것 •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6. 해양레포츠 장비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용시간	이 용 료	비 고
딩기요트, 카약, 래프팅	1일(1대) 기준	25,000	• 강사 필요시 인건비(1명): 100,000원 • 유류비 등 별도
크루저요트	1일(1대) 기준	300,000	
모터보트	1일(1대) 기준	150,000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5.>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서

이 용 자	(남/여)
행 사 명	
행 사 일 시	
행 사 장 소 및 이용시설	
감 면 금 액	
감 면 사 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감면결정사항		결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홍표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의원발의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 상정시기 : **제156회 임시회**(2026. 10. 19. ~ 10. 30. 예정)

○ 발 의 자 : (대표) **전홍표 의원**(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안이유 :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 과정 운영 및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수원 설치에 따라 기존 조례 문구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범위를 확대함. (안 제1조)

나.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

다.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주요 기능을 규정함. (안 제29조)

라.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수강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마. 이용료 및 수강료 관한 별표를 신설 및 수정함. (안 별표2, 별표 2의2 및 별지 제3호서식)

□ 상위법 관련 저촉여부 : 저촉 소지 없음

□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 조회기간 : 2026. 8. 21. ~ 8. 26.

○ 회신의견

부서명	의 견
예산담당관	신규 연수원 건립 지양 및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 임의 보수교육인만큼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적정 수수료 산정을 통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 조례·규칙소심의회 개최(해양항만수산국)

○ 개최기간 : 2026. 8. 27.(목)

○ 개최결과 : 원안가결(법령에 따른 자격 갱신과정이 아닌 교육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 종합 검토 의견 : 수 용

- ㅇ 현재 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요트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 수준의 체험·교육에 국한되어 있음.
- ㅇ 관내 관련 인프라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과정만 운영 중으로, 현행 국내 요·보트 면허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ㅇ 선박(상선·어선 등)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필수 보수교육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ㅇ 이에 따라 요·보트 등 해양레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면허·보수교육 체계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원해양레저연수원"의 설치가 필요함.
- ㅇ 재정부담 사항 : 있음

1. 창원 해양레저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연도별 예상 투자비용

(단위 : 천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비고
예상 투자비	210,090	210,090	**1,650,090**	210,090	210,090	210,090	210,090	물가상승률 미반영

※ 물품 내용연한(조달청 기준) : 요트(6년), 구조정(7년)

2.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 및 운영(도 내 유사한 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를 기초값 산정)

구 분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1,650,090,000**	- 일반운영비 등(상시, 연단위) = 210,090,000원 - 장비구입+신규설치비 = 1,440,000,000원		
인건비	176,491,030	관리직(경력 10년)	65,961,190원*1명 = 65,961,190원	창원시설공단 인건비 기준 산출
		강사(경력 3년)	55,264,920원*2명 = 110,529,840원	
일반운영비	13,200,000	장비 수선비 등	1,100,000원*12월 = 13,200,000원	타 시도 운영비 근거
공공운영비	10,308,970	전기, 수도, 통신 요금 등	10,308,970원*1식 = 10,308,970원	
교육장	180,090,000	사무실(30㎡)	2,090,000원*1년 = 2,090,000원	임차(해양레포츠센터 사무실)
		육상교육장	80,000원*100회 = 8,000,000원	강의실 대관(해양레포츠센터)
		해상교육장(3선석)	170,000,000원*1식 = 170,000,000원	신규 설치
장비구입비	1,270,000,000	크루저요트(38피트)	600,000,000원*2대 = 1,200,000,000원	완제품 현장 도착도
		구조정(6m)	70,000,000원*1대 = 70,000,000원	완제품 현장 도착도

※ 기존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활성화 시(3차연도 예상)장비 등 구입

붙임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각 1부. 끝.

붙 임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8조(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보수(補修)교육 등을 실시하는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을 창원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남도 내 유사한 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를 기초값 산정
- 연도별 예상 투자비용(물가 상승률 미 반영)
- 물품 내용연한(조달청 기준) : 요트(6년), 구조정(7년)
- 기존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활성화 시(3차연도 예상) 장비 등 구입

나. 추계 결과

구분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650,090,000**				
인건비	176,491,030	관리직(경력 10년)	65,961,190원*1명	= 65,961,190원	창원시설공단 인건비 기준 산출
		강사(경력 3년)	55,264,920원*2명	= 110,529,840원	
일반 운영비	13,200,000	장비 수선비 등	1,100,000원*12월	= 13,200,000원	타 시도 운영비 근거
공공 운영비	10,308,970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10,308,970원*1식	= 10,308,970원	
장비 구입비	1,270,000,000	요·보트(38피트)	600,000,000원*2대	= 1,200,000,000원	완제품 현장 도착도
		구조정(6m)	70,000,000원*1대	= 70,000,000원	완제품 현장 도착도
교육장	180,090,000	사무실(30㎡)	2,090,000원*1년	= 2,090,000원	임차 (해양레포츠센터 사무실)
		육상교육장	80,000원*100회	= 8,000,000원	강의실 대관 (해양레포츠센터)
		해상교육장(3선석)	170,000,000원*1식	= 170,000,000원	신규 설치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시비 1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 입		176,000	176,000	176,000	176,000	176,000	880,000
교육비 수입		176,000	176,000	176,000	176,000	176,000	880,000
세 출		210,090	210,090	**1,650,090**	210,090	210,090	2,490,450
시설 및 장비 구입비 등		210,090	210,090	**1,650,090**	210,090	210,090	2,490,450
재원 조달		210,090	210,090	**1,650,090**	210,090	210,090	2,490,450
자체 재원	합 계	210,090	210,090	**1,650,090**	210,090	210,090	2,490,450

※ 세입 산출근거 : 176,000,000원

- 보수교육 과정 : 70,000원 * 8명*200일 = 112,000,000원
- 해상안전교육 과정 : 40,000원 * 8명*200일 = 64,000,000원

3. 작성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代 안 영 화